

제 3 장 : 음성권 침해 사례

사 례 44

시중에 판매되는 원액기의 문제점을 보도하면서 쇼호스트인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을 무단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.

사 건 : 2013서울조정, 2013서울조정2(병합) 각 손해청구

신 청 인 : 이 ○ ○

피신청인 : 1. 주식회사 문화방송, 2. 주식회사 아이엠비씨

중 재 부 : 서울제8중재부

접 수 일 : 2013. 01. 04

사 건 개 요

- 피신청인은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원액기로 짠 주스의 영양소가 낮다는 취지의 방송에서 원액기를 판매한 쇼호스트인 신청인의 음성과 초상을 방영했다.
-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음성과 초상권 이용에 승낙한 사실이 없고, 음성 변조나 모자이크 처리 등도 되지 않았으며, 신청인은 이 방송으로 인해 왜곡된 판매 방송을 하는 쇼호스트로 인식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10,000,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.
- 심리결과,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,000,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iMBC의 조정대상 보도 동영상 중 신청인(초상 및 음성)이 나와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향후 이를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, 신청인에게 해당 방송과 관련, 유감을 표명하는 것으로 당사간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했다.

조정대상보도 1

■ **MBC-TV** : 불만제로 UP 프로그램 『[5회] 고소한 실험 - 원액기 열풍 속에서 현명하게 살아남는 법』 제하의 보도 (2012년 11월 8일자 20:50)

■ **내 용** : (전략)

▷ 음성 (00:36:13~00:36:18)

“그 안에 노란색 정말 보라색 영양 얼마나 많아요? 그거를 짜주는 거예요.”

▷ 음성 (00:36:23)

“네”

▷ 손, 얼굴 노출 (00:36:26~00:36:30)

석류 씨를 들고 있는 신청인 오른쪽 손. 이어서, 모자이크처리 없이 인식 가능한 얼굴 부분만 살짝 초점이 흐릿한 채로 신청인이 석류원액을 마시는 모습

▷ 얼굴만 흐릿하게 상반신 움직임 전체 노출 (00:42:56~00:42:58)

▷ 음성, 손, 상반신 움직임 노출 (00:46:43~00:46:56)

“이게 여러분 실처럼 찌꺼기가 실 됐어요. 바느질 하겠어요. 이 껌질에 이 실 보이세요? 이걸 소화 안 되는 거 잿아요? 이걸 소화 안 되는 거 잿아요? (반복사용)
이것만 버리고 나머지 앞으로 다 짰어요. 한 잔을 신선하게“

(후략)

조정대상보도 2

- **IMBC** : 『[다시보기] 고소한 실험 - 원액기 열풍 속에서 현명하게 살아남는 법』
제하의 기사 (2012년 11월 8일자)
- **내 용** : <조정대상보도 1의 보도내용 참조>

조정신청취지

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,000,000원 및 사건 조정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5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.

사건처리결과

조정성립

조정성립사항

1.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2013년 1월 18일까지 금 1,000,000원을 지급한다. 다만,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.
2. 피신청인 주식회사 아이엠비씨는 2013년 1월 18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해당 조정대상보도 동영상 중 신청인(초상 및 음성)이 나와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향후 이를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.
3.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 방송과 관련, 유감을 표명한다.
4. 피신청인 주식회사 아이엠비씨가 위 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, 위 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.
5. 신청인은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들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해 별도의 민·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.

2013. 01. 14.

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

피신청인들이 연대하여 손해배상금 1,000,000원 지급